X - 67 - 2015

조직의 위험관리에 관한 지침

2015. 11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주식회사 류앤컴퍼니 류보혁
- 제·개정 경과
 - 2015년 11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 - KS A ISO/IEC Guide 73, 리스크관리-용어-규격에 사용하기 위한 지침, 2002
 - ISO 31000, Risk management Principles and guidelines, 2009
 - HB 203,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Principles and process, 2006
 - HB 205, OHS Risk management handbook, 2004
 - HB 327, Communicating and consulting about risk, 2010
 - HB 4360, Risk management guidelines Companion to AS/NZS 4360, 2004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 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5년 12월 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조직의 위험관리에 관한 지침 제안개요

I. 제정이유

이 지침은 조직의 활동 범위, 전략, 의사결정, 운영, 절차, 기능, 제품, 서비스 및 자산 등에서의 위험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,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II. 제정(안)의 주요내용

- 1. 이 기술지침은 다음의 기존 기술지침을 통합한 제정(안)임
 - X-2-2014 리스크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
 - X-3-2012 리스크평가 절차에 관한 지침
 - X-4-2012 리스크 평가기법 선정에 관한 지침
 - X-17-2012 리스크 관리절차의 문서화에 관한 지침
 - X-16-2012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조건설정에 관한 지침
 - X-18-2012 리스크 정보교환 및 상담에 관한 지침
- 2. 이 기술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위험관리의 기본 원칙
 - 위험관리의 구조
 - 위험관리 절차
- 3. 주요 수정,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목적 및 적용범위 등을 통합하고 수정함
 - 기술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보완함

조직의 위험관리에 관한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조직의 활동 범위, 전략, 의사결정, 운영, 절차, 기능, 제품, 서비스 및 자산 등에서의 위험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,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공기관, 기업, 협회, 단체 또는 개인 등의 모든 조직의 위험관리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위험(Risk)"이라 함은 목적(Objective)에 대한 불확실(Uncertainty)한 결과 (Effect)를 말한다.
 - 주 1) 위험은 사건의 발생 확률과 사건(환경 변화) 결과의 조합으로 나타낸다.
 - 2) 목적은 다양한 관점(재무, 안전보건, 환경 목적 등)과 다양한 수준(전략, 조직, 프로젝트, 제품 및 절차)이 될 수 있다.
 - 3) 결과는 긍정적 및/또는 부정적으로 예측된 것으로부터 이탈된 것이다.
 - 4) 불확실은 사건, 그 결과나 확률에 관한 지식이나 이해에 관련된 정보가 결핍된 상태이다.
 - (나) "위험관리(Risk management)"라 함은 위험과 관련되는 조직을 직접 또는 제어하기 위한 관련 활동을 말한다.

- (다) "위험관리 구조(Risk management framework)"라 함은 조직 전체를 통하여 위험관리의 설계, 실행, 모니터링, 검토 및 지속적인 증진을 위한 기반 (Foundations) 및 조직구성 부분을 말한다.
 - 주 1) 기반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(Policy), 목적, 규정(Mandate) 및 실행 (Commitment)을 포함한다.
 - 2) 조직구성은 계획, 관계, 책임(Accountabilities), 자원, 절차(Processes) 및 활동을 포함한다.
- (라) "위험관리자"라 함은 위험을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(마) "위험관리 절차(Risk management process)"라 함은 위험에 대한 관리정책, 정보교환 절차 및 실행, 상담, 환경조건 설정, 파악, 분석, 평가, 처리, 모니터 링 및 검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말한다.
- (바) "환경조건 설정(Establishing the context)"이라 함은 위험을 관리할 때 고려 하여야 하는 내외부 파라미터를 수립하고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범 위 및 위험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(사) "의사소통(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)"이라 함은 조직이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정보를 얻거나 전달하고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절차를 말한다.
- (아) "이해관계자"라 함은 어떠한 결정이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.
- (자) "위험성평가(Risk assessment)"라 함은 위험의 파악, 분석, 수준결정 등의 절차를 말한다.
- (차) "위험수준 결정(Risk evaluation)"이라 함은 위험성 및/또는 그 크기가 수용가 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험관리 기준을 갖고 위험분석 결과를 분석하는 절차를 말한다.
- (카) "위험기준(Risk criteria)"이라 함은 위험의 강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용어를 말한다.
- (타) "위험수준(Risk level)"이라 함은 위험의 빈도와 강도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위험성의 크기를 말한다.
- (파) "개선조치"라 함은 위험원의 제거, 발생 확률의 변경, 사고결과의 변경 등을 통하여 위험을 감소시키는 절차를 말한다.

- (하) "모니터링"이라 함은 요구 또는 기대되는 성과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태의 지속적인 점검, 감독, 관찰 또는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(2) 그밖에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 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위험관리의 기본원칙

모든 조직은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한다.

- (1) 위험관리는 근로자의 건강·안전보건·보안·법규 및 규정 준수·환경보호·품질·프로 젝트 관리·운영의 효율성 등 조직의 목적 달성 및 증진에 기여한다.
- (2) 위험관리는 조직의 주요활동 및 절차에서 분리된 별도의 활동이 아니고, 조직의 전략계획·프로젝트 및 경영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직의 업무와 책임 등을 포함해 야 한다.
- (3) 위험관리는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.
- (4) 위험관리는 불확실성을 명확히 해결해 준다.
- (5) 위험관리는 체계적이고 시의 적절하여야하며 효율성·지속성·신뢰성이 있는 결과 의 산출에 기여한다.
- (6) 위험관리 절차의 입력은 과거 데이터·경험·이해관계자의 의견·관찰·예측 및 전문 가의 결정 등과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.
- (7) 위험관리는 조직 내외부 환경 및 위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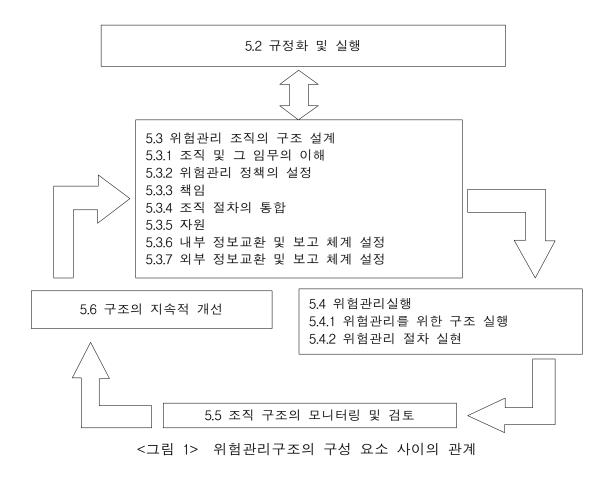
X - 67 - 2015

- (8) 위험관리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촉진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내외부 사람들의 능력, 인지 및 의도 등을 고려한다.
- (9) 위험관리는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, 특히 경영자는 시의 적절하게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위험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함을 보장한다.
- (10) 위험관리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이에 반응해야 하며, 내외부 사건은 환경조건과 지식의 변화, 위험의 모니터링과 검토, 새로운 위험의 발생 또는 변경, 기타 소멸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.
- (11) 위험관리는 조직의 지속적인 개선 증진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한다.

5. 위험관리의 구조

5.1 일반사항

- (1) 위험관리의 성공은 효율적인 조직의 구성 여부에 달려있다.
- (2) 위험관리의 구조는 변화하는 환경조건 내에서 위험관리 절차의 적용을 통한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도록 구성한다(6절 참조).
- (3) 위험관리의 구조는 도출된 위험정보가 모든 조직의 각 계층에 충분히 보고되고,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갖고 수행하도록 한다.
- (4) 이 절에서는 위험관리 구조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기술하며, 이를 요약하면 <그림 1>과 같다.



5.2 규정화 및 실행

위험관리의 도입과 지속적인 효과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.

- (1)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승인
- (2) 조직의 문화와 위험관리 정책의 부합 확인
- (3) 조직의 성과지표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성과지표 결정
- (4) 조직의 목적과 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목적
- (5) 법률 및 규정 준수 보장
- (6) 조직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부여

- (7) 필요한 자원이 위험관리에 배정되는지를 보장
- (8)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위험관리의 장점을 홍보
- (9)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구조의 지속적인 유지를 보장
- 5.3 위험관리 조직의 구조 설계
- 5.3.1 조직 및 환경조건의 이해
 - (1) 위험관리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하기 전에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의 환경조건에 대한 평가와 이해가 중요하다.
 - (2) 조직 외부환경조건 평가에서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.
 - (가) 국제, 국내 또는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, 사회적, 문화적, 정치적, 법적, 규정, 재정, 기술, 경제, 자연 및 경쟁 환경 등
 - (나) 조직의 목적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과 경향
 - (다)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, 인식 및 가치
 - (3) 조직 내부환경조건 평가에서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.
 - (가) 지배구조, 조직구조, 책임
 - (나) 정책, 목적 및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적재적소 환경조건
 - (다) 자원 및 지식에 관한 이해(즉, 자본, 시간, 사람, 절차, 시스템 및 기술 등)
 - (라) 정보시스템, 정보흐름(공식 및 비공식) 및 결정 절차
 - (마) 내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, 인식 및 가치
 - (바) 조직문화
 - (사) 조직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준, 지침 및 모델
 - (아) 관계자 등과의 계약 형태와 범위 등

X - 67 - 2015

5.3.2 위험관리 정책의 설정

- (1) 위험관리 정책은 다음과 같이 조직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고 실행한다.
 - (가) 위험관리 조직의 기반
 - (나) 조직의 목적과 위험관리 정책의 연계
 - (다) 위험관리를 위한 재정능력 및 책임
 - (라) 상충되는 이해관계자를 다루는 방법
 - (마) 위험관리를 위한 재정능력 및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용자원을 지원
 - (바) 위험관리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방법
 - (사) 사건이나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정책 및 구조를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실행방법
- (2)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정보를 적절히 교환한다.

5.3.3 책임

조직은 위험관리의 실행 및 유지, 개선조치의 적절성·효율성·효과성 등을 포함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정, 권한 및 적합한 능력 등을 보장하되, 다음에 따라이를 실행하도록 한다.

- (1)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위험관리자의 파악
- (2) 위험관리를 위한 개발, 실행, 정비 등의 책임자의 파악
- (3) 위험관리 조직에서의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파악
- (4) 성과측정, 내외부 보고 및 절차의 향상 방안을 수립

5.3.4 조직절차의 구성

(1) 조직의 모든 절차에 위험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포함시킨다.

X - 67 - 2015

- (2) 정책개발, 사업과 전략의 계획 및 검토, 변경관리 절차에 위험관리 절차를 포함시키도록 한다.
- (3) 위험관리 계획은 전략계획과 같은 조직의 다른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한다.

5.3.5 자원

조직은 위험관리를 위해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되,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사람, 기술, 경험과 능력
- (2)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
- (3) 위험관리에 사용되는 조직의 절차, 방법 및 도구
- (4) 문서화된 절차
- (5) 정보와 지식경영시스템
- (6) 교육훈련프로그램

5.3.6 내부 의사소통 체계 설정

- (1) 조직은 재정 및 위험관리자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내부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되, 이러한 체계는 다음을 통하여 실행을 보장한다.
 - (가) 위험관리 구조의 핵심요소, 변경 등의 적절한 정보교환
 - (나) 위험관리 구조에 대한 내부보고, 효과 및 출력 등
 - (다) 위험관리의 적용에 의해 도출된 적절한 수준과 횟수에 관한 정보
 - (라) 내부 이해관계자와의 상담절차

X - 67 - 2015

- (2) 이러한 체계에는 다양한 계통으로부터의 위험정보를 통합하는 절차를 포함하되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.
- 5.3.7 외부 정보교환 및 보고체계의 설정
 - (1) 조직은 외부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한다.
 - (가) 적합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정보의 효과적인 교환을 보장
 - (나) 법률, 규제 및 정부 요구사항 등 외부보고의 충족
 - (다) 의사소통의 피드백 및 보고계통을 구비
 - (라) 조직의 신뢰구축을 위한 정보교환
 - (마) 위기 또는 우발사고 발생의 경우,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관계 등
 - (2) 이러한 체계는 다양한 계통으로부터의 위험정보를 통합하는 절차를 포함하되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.
- 5.4 위험관리 실행
- 5.4.1 위험관리를 위한 구조 실행

조직구조는 위험관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르도록 한다.

- (1) 조직구조 실행을 위한 적합한 시기 및 정책에 대한 수립
- (2) 조직절차에 대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적용
- (3)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의 준수
- (4) 위험관리절차의 출력에 부합하는 목적의 개발 및 설정을 포함한 의사결정 보장
- (5) 위험관리 구조가 적절히 유지됨을 보장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

X - 67 - 2015

5.4.2 위험관리 절차 실행

위험관리는 5절에서 규정하는 위험관리 절차의 실행과 조직절차의 일환으로 적절한 수준 및 기능에서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한다.

5.5 조직구조의 모니터링 및 검토

조직은 위험관리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구조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도록 한다.

- (1) 위험관리 성과측정 지표의 적합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
- (2) 위험관리 계획의 편차를 포함하는 측정 환경조건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
- (3) 조직의 내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위험관리 구조, 정책 및 계획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지를 주기적으로 검토
- (4) 위험관리 계획의 환경조건과 위험관리 정책과의 부합하는 지를 기록
- (5) 위험관리 구조의 효과성 검토

5.6 조직구조의 지속적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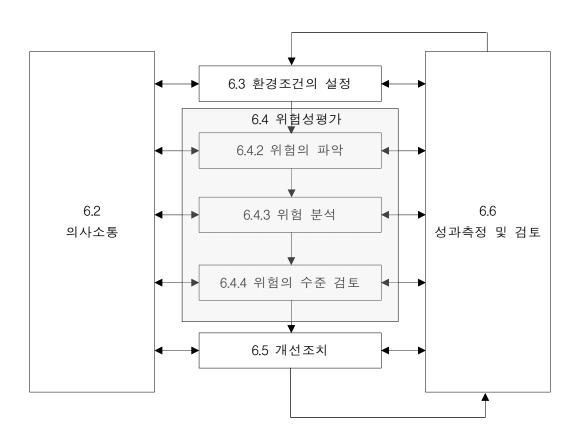
- (1) 조직구조의 모니터링 및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, 위험관리의 구조·정책 및 계획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.
- (2) 이러한 결정은 위험관리의 조직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.

KOSHA GUIDE X - 67 - 2015

6. 위험관리 절차

6.1 일반 사항

위험관리의 절차는 관리의 통합, 조직문화와 실행에 포함시키고 조직의 사업절차에 맞도록 하되, 6.2 ~ 6.6에 규정된 활동을 포함하도록 한다(<그림 2> 참조),



<그림 2> 위험관리 절차

6.2 의사소통

- (1)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은 위험관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이를 위한 계획은 초기단계에서 개발하도록 한다.
- (2) 도출된 위험과 그 결과가 알려진 경우라면, 위험에 관련된 사항들은 의사소통에 서 다루도록 한다.

- (3) 효과적인 내외부의 의사소통은 위험관리의 시행책임이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자에게 각종 행위의 이유와 그 결정 내용의 이해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.
- (4) 의사소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한다.
 - (가) 환경조건을 적절히 설정하는 데 지원
 - (나)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이해하고 고려
 - (다) 위험의 적절한 파악
 - (라) 위험분석을 함께 할 다양한 전문가 확보
 - (마) 위험관리 기준을 정할 경우, 다양한 의견을 존중
 - (바) 개선조치 계획에 대한 적절한 지원
 - (사) 위험관리 절차에서 적절한 변경 관리
 - (아) 내외부 의사소통 계획의 수립 등
- (5)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은 위험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위험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.

6.3 환경조건의 설정

6.3.1 일반사항

- (1) 위험관리 환경조건을 설정하고 고려하여야 할 내외부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절차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정한다.
- (2) 파라미터는 위험관리 구조(5.3.1 참조)를 설계할 때 고려하는 것과 유사하다.

6.3.2 외부환경조건 설정

(1) 외부환경조건은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대외적인 환경조건을 말하며, 이는 위험관리 기준을 설정할 때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다.

- (2) 외부환경조건 설정은 위험관리절차의 범위를 특정화하기 위하여 법적, 규정 요구사항,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기타 위험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- (3) 외부환경조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되.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.
 - (가) 사회적, 문화적, 정치적, 법적, 재정, 기술, 경제, 자연 및 경쟁환경, 국제적 또는 국내적, 지역적 또는 지방적 인지 여부 등
 - (나) 조직목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요소와 동향
 - (다)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가치와의 관계 등

6.3.3 내부환경조건 설정

- (1) 내부환경조건은 조직이 달성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내부환경조건을 말한다.
- (2) 위험관리 절차는 조직의 지배구조, 구성 및 전략에 적합하여야하며, 내부환경조 건은 조직이 위험을 관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내부의 모든 것을 포 함하며, 다음에 의하여 확립된다.
 - (가) 위험관리는 조직목적, 환경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
 - (나) 특정 사업, 절차 또는 활동의 목적과 기준은 조직전체의 목적을 고려
 - (다) 일부조직에서 전략, 프로젝트 또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인식 실패 로 조직의 신뢰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
- (3) 다음은 내부환경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.
 - (가) 지배구조, 조직구조, 역할과 책무.
 - (나) 정책, 목적 및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적재적소 배치
 - (다) 자원과 역량(자본, 시간, 인력, 절차, 시스템 및 기술)관점에서의 능력 및 이해
 - (라) 내부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가치
 - (마) 조직문화
 - (바) 정보시스템, 정보흐름(공식 및 비공식 포함) 및 의사결정 과정
 - (사) 조직에서 채택한 표준, 지침 및 모델
 - (아) 계약관계의 형태와 범위

6.3.4 위험관리 환경조건 설정

- (1) 위험관리가 적용되는 조직의 활동 목적, 전략, 범위 및 파라미터를 설정한다.
- (2) 위험관리는 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수행한다.
- (3) 필요한 자원, 책임 및 권한 그리고 기록을 유지한다.
- (4) 위험관리 절차의 환경조건은 조직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며,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.
 - (가) 위험관리 활동의 목적
 - (나) 위험관리 절차 내에서의 책임
 - (다) 위험관리 활동(포함 또는 배제할지까지)의 크기와 범위
 - (라) 시간과 장소 측면에서의 활동, 절차, 기능, 프로젝트, 제품, 서비스 또는 자산
 - (마) 특정 프로젝트의 절차 또는 활동과 기타 프로젝트의 절차 또는 활동 사이의 관계
 - (바) 위험성평가 기법
 - (사) 위험관리의 성과 및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
 - (아) 의사결정에 대한 파악
- (5) 선정된 위험관리 기법이 조직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위환경 위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(4)항 및 기타요소의 영향을 고려한다.

6.3.5 위험관리 기준의 수립

- (1) 위험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가치, 목적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위험관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.
- (2) 위험관리 기준 중 일부는 규정 또는 조직이 승인한 사항일 수 있다.

X - 67 - 2015

- (3) 위험관리 기준은 조직의 위험관리 정책(5.3.2 참조)을 충족하되, 위험관리 초기 단계에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한다.
- (4) 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할 때,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발생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의 특성(측정 방법 포함)
 - (나) 발생 가능성에 대한 수립 방법
 - (다) 위험의 가능성 및 결과의 기간(시기)
 - (라) 위험수준의 결정 방법
 - (마) 이해관계자의 관점(견해)
 - (바) 허용 또는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
 - (사) 다양한 위험의 조합이 필요할 경우, 이를 고려

6.4 위험성평가

6.4.1 일반사항

위험성평가는 위험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수준을 결정하는 전체적인 과정이다.

6.4.2 위험파악(Risk identification)

- (1) 조직은 위험원, 영향의 범위, 사건(환경 변화 포함), 잠재적인 원인 및 결과 등을 파악하여, 목적달성의 생성, 강화, 예방, 저하, 가속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사건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위험목록을 만든다. 이는 어떠한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.
- (2) 이 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은 위험은 더 이상 분석되지 않기 때문에 이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.
- (3) 위험파악은 그 위험원이나 원인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조직의 통제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위험을 포함한다.

- (4) 위험파악은 특정결과의 종속 및 누적효과를 포함한 연쇄효과에 의한 시험을 포함한다.
- (5) 위험원이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라도 결과의 폭넓은 범위를 고려한다.
- (6) 발생할 사건의 파악뿐만 아니라, 발생할 수 있는 원인과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 가 있고, 모든 중요한 원인과 결과를 고려한다.
- (7) 조직은 그 목적과 능력 및 직면한 위험에 적합한 위험파악 도구와 기술을 적용한다.
- (8) 적절한 최신정보는 위험파악에 중요하며, 여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적절한 배경 정보를 포함해야한다.
- (9) 적절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파악에 참여한다.

6.4.3 위험분석(Risk analysis)

- (1) 위험분석은 위험의 이해를 포함하며, 위험수준을 검토하여 이를 처리해야 할지를 결정하여 입력하고 가장 적합한 개선조치 정책 및 방법을 제공한다.
- (2) 위험분석은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위험을 포함하는 방법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선정되고 입력할 수 있어야한다.
- (3) 위험분석은 위험요인과 위험원, 결과(긍정적 및 부정적인), 발생할 수 있는 강도 의 확률 등을 고려하고, 그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한다.
- (4) 위험은 결정된 빈도와 강도 그리고 위험의 기타요인에 의하여 분석된다.
- (5) 사건은 복수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, 복수의 목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. 기존의 조치와 효과 및 효율성도 고려한다.
- (6) 위험성평가 결과는 위험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빈도와 강도의 조합이다.

- (7) 이들 모두는 위험관리 기준과 부합해야하며, 다양한 위험과 위험원의 상호 의존 성을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.
- (8) 경영자는 가능하다면, 위험을 분석 할 때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정보교환으로 사전조치 및 위험수준 및 그 민감도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.
- (9)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, 정보의 불확실성, 가용성, 품질, 수량 및 적합성 또는 모델링의 제한 등과 같은 요소들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강조한다.
- (10) 위험분석은 위험의 분석 목적, 정보, 데이터, 가용 가능한 자원에 의존되는 세부적인 변화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, 환경조건에 따라 정량적, 반정량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한다.

6.4.4 위험수준 결정(Risk evaluation)

- (1)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.
- (2) 위험수준 검토는 환경조건을 고려할 때 설정된 위험관리 기준분석 절차에서 발견된 위험수준을 비교하는 것으로, 이를 바탕으로 개선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한다.
- (3) 판단은 보다 넓은 위험 환경조건을 고려하고 위험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조직 이외의 집단이 부담하는 위험의 허용오차를 포함한다.
- (4) 판단은 법적, 규제 및 기타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, 일부 환경조건에서는 위험 평가가 추가적인 분석에 의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.
- (5) 판단은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위험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고, 이러한 판단은 위험상태 및 위험관리 기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.

X - 67 - 2015

6.5 개선조치(Risk treatment)

6.5.1 일반

- (1) 개선조치는 위험의 크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정하고 실행한다. 개선조치는 다음의 순환 절차에 따른다.
 - (가) 개선조치의 평가
 - (나) 잔존위험 수준의 허용가능 여부를 결정
 - (다) 허용가능 하지 않을 경우, 새로운 개선조치 방안 강구
 - (라) 개선조치의 효과를 평가
- (3) 개선조치 방법은 모든 환경조건에서 다음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.
 - (가) 위험회피
 - (나) 위험의 수용 또는 증가
 - (다) 위험원의 제거
 - (라) 확률의 변경
 - (마) 결과의 변경
 - (바) 다른 조직(계약 및 보험 포함)과의 위험 분담
 - (사) 위험유지

6.5.2 개선조치 방법의 선정

- (1) 가장 적절한 개선조치 선택방법은 사회적 책임, 자연환경의 보호, 법률, 규정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하여 비용과 효과를 고려한다.
- (2) 개선조치 방법은 개별 또는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(3) 개선조치 방법을 선택할 때,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가치, 적절한 정보교환 방법을 고려하며, 개선조치 방법이 조직 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다른 위험을 줄 수 있는 가를 고려한다.

- (4) 동일한 효과라 하더라도 일부의 개선조치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, 개선조치 계획은 개별 개선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분명히 구분한다.
- (5) 중대한 위험은 개선조치의 실패나 무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개선조치 방법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.
 - (가) 개선조치는 평가, 처리, 모니터링 및 검토를 필요로 하는 2차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.
 - (나) 2차 위험은 최초위험의 처리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나, 새로운 위험으로 간주 하지는 않는다.

6.5.3 개선조치 계획의 준비 및 실행

- (1) 개선조치 계획은 선택된 실행방법을 문서화하기 위함으로 처리계획에서 제공되는 정보에는 다음을 포함한다.
 - (가) 실행방법을 선택한 근거
 - (나) 계획을 승인하고 실행할 책임자
 - (다) 제안된 활동
 - (라) 예비비를 포함한 자원
 - (마) 성과측정 및 제약조건
 - (바) 보고, 모니터링 및 추진 일정 등
- (2) 개선조치 계획은 관련 이해관계자와 논의한다.
- (3) 경영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개선조치 후 잔존위험의 특성과 크기를 알아야하며, 잔존위험을 문서화하고 모니터링 및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조치한다.

6.6 모니터링 및 검토

(1) 모니터링 및 검토는 위험관리 절차계획의 일부로써 정기적으로 점검 또는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수시 또는 특별히 실시할 수 있다.

- (2) 모니터링 및 검토 절차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.
 - (가) 책임자 지정
 - (나) 개선조치는 설계 및 운영 모두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임을 보장
 - (다) 위험성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정보
 - (라) 사건(아차사고 포함), 변경, 추이, 성공 및 실패로부터의 분석 및 학습 절차
 - (마) 내외부 환경조건 변화를 확인
 - (바) 추가 위험의 파악
- (3) 개선조치 결과는 성과측정하고 조직의 전체 성과관리, 측정 및 내외부 보고활동 에 포함될 수 있다.
- (4) 모니터링 및 검토 결과는 기록하며, 내외부에 적절히 보고하고, 조직구조의 모니터링 및 검토(5.5 참조)에서 피드백 자료로 사용한다.

6.7 위험관리 과정의 기록

- (1) 위험관리 활동은 추적 가능하여야 하고, 위험관리 절차에서, 기록은 전반적인 절차뿐 만아니라 해당방법과 도구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.
- (2) 기록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한다.
 - (가)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조직의 요구사항
 - (나) 위험관리 목적을 위한 재사용 정보의 편익
 - (다) 기록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및 노력
 - (라) 기록에 대한 법적, 규정과 운영의 필요성
 - (마) 검색 및 저장 매체의 접근방법과 용이성
 - (바) 보존기간
 - (사) 정보의 민감도 등